

붙임5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기준

□ 수수료

구분	계산식
수수료 (천원 미만은 절사)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구분	내용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 :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 2)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 :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 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 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 3)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 0.1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0.2

□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

구분		공사량									
진단 단계	용도별	합계	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자	기타 기술사 등	소방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위험물
사전조사	전체	1.0									
현장 시설 진단	공항	4.5	0.5	0.5	0.5	1.0	0.4	0.7	0.2	0.2	0.5
	철도, 도시철도, 항만	3.0	0.5	0.5	0.2	0.7	0.3	0.4	0.1	0.1	0.2
	공동구	3.0	0.5	0.5	0.2	0.5	0.5	0.4	0.2	0.1	0.1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5.0	0.5	0.5	0.5	1.0	0.3	0.7	1.0	0.2	0.3
	발전소	5.0	0.7	0.5	0.5	1.0	0.5	0.7	0.3	0.5	0.3
비상대응훈련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포함)		4.0									

□ 보정계수 값

연면적의 합계(m ²)	보정계수1 (현장진단)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10,000이하	1.0	0.25
10,000초과 ~ 15,000이하	1.5	0.50
15,000초과 ~ 20,000이하	2.0	0.50
20,000초과 ~ 25,000이하	2.5	1.00
25,000초과 ~ 30,000이하	3.0	1.00
30,000초과 ~ 35,000이하	3.5	1.50
35,000초과 ~ 40,000이하	4.0	1.50
40,000초과 ~ 45,000이하	4.5	1.50
45,000초과 ~ 50,000이하	5.0	1.50
50,000초과 ~ 60,000이하	6.0	2.00
60,000초과 ~ 70,000이하	7.0	2.00
70,000초과 ~ 80,000이하	8.0	2.00
80,000초과 ~ 90,000이하	9.0	2.00
90,000초과 ~ 100,000이하	10.0	2.00
100,000초과	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	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